

#### 스마트폰으로 보기



#### न्ध्री . Dhखें इसि रिडे

서울특별시 간부 공무원이 지켜야 할

# 행위규범

성숙한 나라, 성숙한 사회, 가치지향적인 사회가 되는데 반부때·청령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다.

## 청렴서약서

나는 동행·매력특별시 서울을 만드는데 청렴이 가장 큰 경쟁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한 사회문화를 조성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.

- 1. 나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한다.
- 1.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수행한다.
- 1. 나는 직무수행과 관련한 청<mark>탁이나 이해충</mark>돌 상황을 근절하고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하며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선다.
- 1. 나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지 않으며, 직무와 관련된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여 조직구성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- 1. 나는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서울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공·사생활에 솔선수범한다.

만약,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다짐하며 이에 서명합니다.

>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(서명)

#### 서울특별시민 귀중

#### 목 차

부정청탁 거절 및 금품 수수 금지	5
권한·영향력을 활용한 부당행위(갑질) 금지	10
사적이해관계자 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	11
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금지	13
직장 내 성희롱 · 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	14
4급 이상 공무원 재산등록 의무	15

#### ■ 부정청탁 거절 및 금품 수수 금지

#### ① 부정청탁 거절 및 신고

#### 부정 청탁

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나거나 지위・권한을 남용하여 대상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

#### 대상직무 (14개)

- · 채용 · 승진 · 전보 등 인사 개입
- · 위원(의사결정 관여 직위)선정 · 탈락 개입
- · 특정 계약 당사자 선정 · 탈락 개입
- · 인 · 허가 등 직무 처리
- · 수상 · 포상 등 선정 · 탈락 개입
- ・보조금 등 지원 개입 등 14개 직무

## 신고 처리

- 1 부정청탁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
- 2. 위 조치를 했음에도 재차 청탁받은 경우 조사담당관에게 서면 신고
- \* 감사원·수사기관·국민권익위원회 신고 가능
- 3 부정청탁 신고사항 조사
- 4. 부정청탁으로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'직무 참여 일시 중지'. '직무 대리자 지정', '전보' 조치 가능

#### 벌칙

부정청탁을 받고 직무 수행한 공직자 :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에게 부정청탁 한 공직자: 3천만원 이하 과태료

#### 사례 \* 징계 별도 조치

- · 비공개된 승진심사위원회 위원 명단을 파악 후 위원에게 연락하여 소속 기관 근무자 승진 부탁 → 과태료 50만원 부과
- · 의원 본인이 소유한 회사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 요청. 「지방계약법」상 수의계약 불가하나 수의계약 후 물품 구매
  - → 공문 기안자: 벌금 300만원 선고 / 공문 결재자: 벌금 700만원 선고

#### ② 금품 등 수수 금지

#### 금지 범위

우리시 공무원의 경우 「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」에 따라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일체의 금품 수수 금지

※「청탁금지법」에 따르면 직무관련성이 없을 경우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하 금품 등 수수 가능

- ·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(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사례금 상한액 이내)
- · 상급 공직자가 위로·격려·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

#### 예외사항

- ·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·의례·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·경조사비·선물 등 ※ 음식물(제공자와 공직자가 함께하는 식사 등): 3만원 / 경조사비: 5만원(화환·조화 10만원)
- 농수산물·농수산가공품 15만원(설날·추석 전 24일부터 후 5일까지 30만원) 그 외:5만원
- · 그 밖의 「청탁금지법」 제8조 제3항 각호에서 정한 금품 등

# 신고

- 1.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하고, 조사담당관에게 지체 없이 서면 신고
- \* 멸실·부패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,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,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담당관에게 인도

- ※ 감사원·수사기관·국민권익위원회 신고 가능
- 2. 조사담당관은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반환 또는 인도를 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하도록 조치. 수사 필요성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
- 3 금품 수수 등으로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'직무 참여 일시 중지', '직무 대리자 지정', '전보' 조치 가능

#### 벌칙

제공자 및 수수 공직자: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금품 등 가액의 2~5배에 상당하는 과태료 부과(형사처벌 시 면제)

## 사례

- \* 징계 별도 조치 · 직무관련성이 있는 업체로부터 차용 후 원금만 변제 → 과태료 58만원 부과

· 직무관련성이 있는 업체와 출장 동행 출장비 일부를 업체가 부담 → 과태료 200만원 부과

### 「청탁금지법 시행령」개정사항 안내(시행 2023.8.30.)

ㅇ 개정법령 : 「청탁금지법 시행령」[별표1] 음식물 · 경조사비 · 선물 등의 가액범위

#### ㅇ 개정내용

구분	기존	변경
선물	유가증권 금지	용역 · 물품상품권 허용(5만원)
농수산물·농수산가공품 농수산물·농수산가공품 상품권	10만원	15만원
설날 · 추석 전 24일 ~ 후 5일까지* 농수산물 · 농수산가공품 농수산물 · 농수산가공품 상품권	20만원	30만원

<sup>\*</sup> 해당 기간 이후 수수했어도 해당 기간 중 발송됐다면 가액범위를 30만원으로 함

#### ㅇ 적용예시



#### ③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

#### 적용 대상

직무 관련 또는 지위·직책에서 유래된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· 홍보·토론회·세미나·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·강연·기고 등 \* 직무 또는 영향력과 무관한 경우 적용 대상 아니며,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도 제외된

- ㆍ 강의 등 : 1시간당 40만원, 1시간 초과 시 사례금 총액 최대 60만원
- \* 강의 등 일자, 대상, 내용(주제) 등을 기준으로 1회의 외부강의 해당 여부 판단
- · 기고 : 1건당 40만원

#### 상한액

- ※ 명목에 관계없이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 등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 포함
- \* 기관에서 여비 미지급 시 사례금 제공자가 공무원 여비 규정 기준 내에서 제공하는 교통비 숙박비·식비는 제외
- ※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사례금 상한액은 외국기관 지급기준에 따름

#### <sup>\*</sup> 되고 2. 상한<sup>9</sup>

- 1. 외부강의 등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사담당관에게 서면 신고
- ※ 외부강의 등 요청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미신고
- 2. 상한액 초과 사례금 수령 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
- 3. 신고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강의 등 제한 가능

#### 벌칙

신고

처리

상한액 초과 사례금 미신고 및 미반환: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#### 사례 \* 징계 별도 조치

· 상한액 초과금액(40만원) 미신고하였으며 향후 금액 반환 → 과태료 40만원 부과

/

#### 외부강의 FAQ

A2

- Q1 "직무 관련"의 의미는?
- Q2 사례금액만 제한되는 것인지?
- 「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」제27조 제9항에 따라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를 월 3회 또는
- ※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거나 겸직허가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는 횟수 미포함

월 6시간을 초과하여 수행하는 것은 제한함.

- Q3 경직 허가를 받고 허가받은 직무에 따라 수행하는 강의도 외부강의 신고해야 하는지?
- A3 사전허가를 받고 겸직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「청탁금지법」에서 정한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음.
- O4 근무시간 내 토론회·세미나 등에 참석해서 발표하는 경우 복무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?
  - 담당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해당 기관의 기능수행 및 정책 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 또는 해당
- A4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강의 허용되며, 출장 처리 가능.
  - ※ 교통편을 제공받거나 여비와 관련한 실비를 받은 경우 여비 지급 불가
- Q5 직무와 무관한 강의는 신고 대상이 아니고 사례금 제한도 없는지?
- 「청탁금지법」제10조를 적용하진 않지만 과도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A5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지체없이 반환하고 신고하여야 함 .

#### ■ 권한 · 영향력을 활용한 부당행위(갑질) 금지

유형	부당행위 내용
법령 등 위반	<ul> <li>인·허가, 계약 등과 관련하여 법령에 위반되는 조건이나 기준을 적용하는 등 특정인에게 유·불리하게 작용토록 하는 행위</li> <li>정당한 사유 없이 규정 변경하여 특정인에게 유·불리하게 작용토록 하는 행위</li> </ul>
사적이익 요구	<ul> <li>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품, 향응, 기타 편의 등을 요구</li> <li>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무 관련자에게 사적 용무 지시</li> </ul>
부당한 인사	<ul> <li>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 임의로 서열을 변경하거나 부당하게 승진자를 사전에 내정</li> <li>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산하기관 등에 특정인 채용 강요</li> <li>채용 시 공고된 내용과 다르게 채용하거나 채용기준을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변경</li> </ul>
비인격적 대우	<ul> <li>하급자의 인격이나 외모 등을 비하하는 행위</li> <li>하급자에게 욕설·폭언·폭행·불필요한 신체접촉 등 모욕적 언행</li> </ul>
기관 이기주의	<ul> <li>계약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부담을 전가하는 계약 외 사항을 요구하거나 특정인에게 하도급 줄 것을 강요하는 행위</li> <li>발주기관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특약 조건 부가</li> <li>특정사업자에게 유리한 입찰 조건 설정</li> </ul>
업무 불이익	<ul> <li>긴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휴가기간·심야 등 사회통념상 근무가 적절하지 않은 시간대에 업무지시</li> <li>하급자에게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과다한 자료를 요구하는 등 부당하게 업무 부담을 주는 행위</li> </ul>
부당한 민원 응대	<ul> <li>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 접수를 거부하거나 취하 유도</li> <li>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적으로 민원처리를 지연하거나, 처리하기 까다롭다는 이유로 관련성이 희박한 다른 부서로 떠넘기기</li> </ul>
기타	<ul> <li>특정인을 차별하거나 따돌리는 등의 행위</li> <li>본인 의사에 반하여 회식 등 모임에 참여토록 강요하는 행위</li> <li>갑질 등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철회토록 회유·강요</li> </ul>

9

#### ■ 사적이해관계자 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

- o 이해충돌이란? :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
- ㅇ「이해충돌방지법」상 공직자의 행위 기준

신고·제출 의무	제한·금지 행위
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·회피 의무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, 매수 신고 ③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	<ul> <li>⑥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</li> <li>⑦ 가족 채용 제한</li> <li>⑧ 수의계약 체결 제한</li> <li>⑨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, 수익 금지</li> <li>⑩ 직무상 비밀·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</li> </ul>

#### ㅇ 신고 관련 용어 정의

용어	정의
사적 이해관계자	<ul> <li>가족(「민법」제779조에 따른 가족)</li> <li>가족이 임원·대표자·관리자·사외이사로 재직 중인 법인 또는 단체</li> <li>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·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</li> <li>그 밖에 「이해충돌방지법」 제6조 각 목에서 정한 사람</li> </ul>
부동산 보유 · 매수 신고 직무	· 「개발제한구역법」등 21개 법률 관련 부동산 개발업무 ※ 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[별표1] 확인
민간부문 업무 활동 내역	·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 이내 활동 내역 ※「이해충돌방지법」상 고위공직자에 한함
직무관련자	<ul> <li>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</li> <li>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</li> <li>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</li> <li>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</li> </ul>
퇴직자	· 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

#### ㅇ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

- 이해충돌방지총괄담당관 : 감사위원장
- 이해충돌방지담당관: 단위기관별 직제상 선임부서장(4급 과장 또는 담당관)
-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직무
- 1.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 · 상담
- 2.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·기피 신청, 부동산 보유·매수 신고 또는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에 관한 신고의 접수 및 관리
- 3.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·기피 신청 또는 부동산 보유·매수 신고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·점검
- 4. 고위공직자의 업무활동 내역 관리 및 공개
- 5.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의 접수 및 관리
- 6. 「이해충돌방지법」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 · 신청의 접수, 처리 및 내용의 조사
- 7. 「이해충돌방지법 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
- o 이해충돌 신고 방법 : ① 공공기관 청렴포털(ep.clean.go.kr)로 신고



공공기관 청렴포털 접속

공공기관 청렴포털 접속 🔹 (최초 신고)사용자등록 🖫 신고대상 선택 및 작성·제출

#### ② 또는 신청서 서면 제출

- 신청서 양식은 「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」 참고

11 12

#### ■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금지

- ㅇ 「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」, 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」, 「청탁금지법」,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집행해야 함
  - 지인과의 식사, 사적 이용 물품 구매 등 사적 용도 사용금지
  - 심야(23시 이후), 자택 근처 등 업무 추진 관련 적은 시간·장소 사용 금지
  - 축의·부의금품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 가능
  - 내부 직원 격려 등의 비용은 정원가산·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지출

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(9개)	세부사항
1.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 · 간담회 · 행사	<ul> <li>해당 지자체 시책사업 추진 기여자 또는 격려가 필요한 관계자에게 식사 제공</li> <li>해당 지자체 주최 회의 참석자에게 식사 제공</li> <li>* 사전에 구체적인 회의 방법과 참석 범위 정하여야함</li> <li>해당 지자체 주관 직무 관련 행사 관계자에게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</li> <li>국제 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해 외빈에게 선물 증정 및 식사 제공</li> <li>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밖 기관이 벤치마킹 등을 위해 방문한 경우 방문자에게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</li> </ul>
2.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	<ul> <li>업무추진 격려를 위한 식사 제공</li> <li>공로 많은 퇴직 예정 공무원에게 격려금품 지금</li> <li>부상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위로금품 지급</li> <li>연말, 설, 추석 또는 생일에 자체계획과 예산에 따라 지급하는 의례적인</li></ul>
격려 및 지원	선물 등
3. 직무수행과 관련된	· 내방객에게 제공하는 음료·다과 구입
통상적인 경비	· 축의·부의금품 ※ 지급 대상 제한

- 4. 이재민·불우소외계층 격려 및 지원 5. 시책 · 지역 홍보 6. 현업(현장)부서 근무자 격려·지원
- 7. 학술 · 문화예술 · 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8.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
- 9.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상·방법·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 · 법령에 미리 정해진 경우
-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시 홈페이지에 매월 공개하며, 정보공개도 수시로 청구되므로 주의 필요

#### ■ 직장 내 성희롱 · 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

#### o 성희롱·성폭력·2차 피해 구분

구분	정의	사례
성희롱	·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	<ul> <li>야간 또는 주말에 직원에게 업무 관련 없는 내용으로 연락하고 사적 만남 지속 요구</li> <li>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</li> </ul>
성폭력	· 「성폭력처벌법」따라 범죄로 인정되는 행위	· 강제추행 등
2차 피해	· 피해자에게 정신 · 신체 · 경제적 피해를 입히거나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	<ul><li>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신상 공개</li><li> 불리한 평판 만드는 글 작성 등</li></ul>

#### ㅇ 상급자의 책무: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

- 성희롱 · 성폭력 피해 발생 인지 시 피해자에게 처리 절차를 충실하게 안내
- \*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·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참고
-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고충 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 보호 노력
- 피해자 보호 조치, 2차 피해 예방 조치 등 고충 처리 과정에 적극 협조
- 고충 처리 종료 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는지 관찰하고 구성원들에 의한 2차 피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

#### o 서울시 성희롱·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처리 세부절차



사건처리 세부절차

13

■ 4급 이상 공무원 재산등록 의무

MEMO

ㅇ 등록대상 : 본인, 배우자(사실혼 포함), 본인의 직계존 · 비속의 재산

\*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(딸), 외조부모, 외손자녀는 제외

ㅇ 재산유형 : 부동산, 예금, 증권, 채권, 채무, 귀금속 등 소유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, 외국에 있는 재산도 포함

※「공직자윤리법」개정('23.6.)에 따라 가상자산도 등록대상임('23.12. 시행)

#### ㅇ 등록시기

- 최초신고 : 등록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
- 변동신고
- · (정기) 등록의무자 전원이 매년 2월 말까지
- · (의무면제·유예복귀·재등록·퇴직)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

#### ㅇ 고지거부

- 신청대상 :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않는 직계존비속 중 자기 재산의 고지를 거부하려는 사람
- 신청방법 : 신청기간 내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신청서 및 독립생계 증명자료 제출



고지거부 세부사항

ㅇ 성실등록 의무위반 시: 경고 및 시정조치, 과태료 부과, 징계 또는 해임